

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민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8
----------	------

발의일 : 2015. 10. .

발의자 : 최민규·신희근·이봉준·김명기·김재열·전갑봉·
서정택·김주은·김순희·강한옥·김현상·최정아(12명)

1. 제안이유

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명시 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(1) 개정안 : 별첨

(2) 입법예고 :

(3) 규제사무 :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위원은 각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”를 “각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” 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으로 ...”를 “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...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, 위원은 각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.</p> <p>③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, <u>각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</u>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